



안전관리

# 가스안전 시범지역 및 모범업소 지정·운영 계획

-가스안전공사-

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 제2항 제10호에 의한 「시범사업」과 관련,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.

## 〈추진배경〉

- 광역자치단체(시·도)별로 「가스안전관리 시범지역」을 지정·운영,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안전관리 발전의 진원지가 되도록 유도
- 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업소는 「가스안전 모범업소」로 발굴·지정, 자율안전 실천문화 확산에 표본이 되도록 유도

## 1. 그간의 추진성과

### □ 지정·운영

- 공사·지자체 공동으로 가스안전시범지역 및 모범업소를 지정·운영
  - 시범지역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단체(구·시·군)1개 지역씩 지정·운영함을 목표로 추진
  - 모범업소는 기초자치단체별 1개업소(요식업소)씩 지정·운영함을 목표로 추진

	계	97년	98년	99년
· 시범지역(개소)	13	4	4	5
· 모범업소(개소)	374	7	213	154

### □ 운영효과

- 시범지역은 관할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촉진
- 모범업소 지정으로 업소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체시설개선·종업원 안전교육실시 등 자율 안전관리문화를 조기 정착
- 공사는 시범지역 및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기술지도, 종업원교육 및 가스안전지 등에 소개 기사를 연재물로 게재하여 홍보효과 제고

## 2. 2000년 추진계획

### <기본방향>

- 시범지역은 광역자치단체장(시·도)이 1개 지역 이상을 지정·운영
  -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장과 공사 지역본부장 공동명의 사용
- 모범업소는 기초자치단체장(구·시·군)이 3개소 이상 지정·운영
  - 필요시 기초자치단체장과 공사 지역본부(지사)장 공동명의 사용

## 가. 지정대상

- 광역 및 기초단체별 기본지정목표 기준 미지정분에 대해 지정
  - 시범지역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단체(구·시·군)1개 지역씩 지정·운영함을 목표로 추진

	지정대상	지정완료	2000 계획
· 시범지역(개소)	16	13	3(대전, 울산, 경기)
· 모범업소(개소)	732	374	358

## 나. 지정절차 및 지원방법

### □ 가스안전 시범지역

-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정·지정하고 지역본부 및 가스공급자 단체(도시가스사, LPG판매, 집단공급, LPG충전)가 참여하는 「안전관리협의회 등」에서 지원 및 협조방안 협의
-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장과 공사 지역본부장 공동명의 사용

### □ 가스안전 모범업소

-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선정·지정하고, 지역본부(지사) 및 가스공급자(도시가스, LPG판매)가 참여하는 「안전관리협의회 등」에서 지원 및 협조방안 협의
- 필요시 기초자치단체장과 공사 지역본부(지사)장 공동명의 사용

**다. 주요운영 및 지원사항**

시범지역	모범업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「안전관리 협의회 등」 구성·운영하여 지원 및 협조방안 협의</li> <li>-구성 : 광역자치단체, 우리공사(지역본부), 가스공급자(단체), 시공자(단체), 기기제조사(단체), 시민(사회)단체 등 (지역실정에 맞는 구성원으로 조직)</li> <li>-지원 및 협조방안 협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생활보호대상자 시설개선사업</li> <li>· 가스안전기기 보급확대사업</li> <li>· 체적거래제 전환사업</li> <li>· 자율안전실천 합동지도·계몽</li> <li>· 가스안전기기 보급확대사업</li> <li>· 각종 안전점검결과 지적시설 개선방안 등</li> </ul> </li> <li>○이동홍보차량 이용 주민자율안전홍보 집중전개 (자율안전점검의 날, 매분기 마지막달 4일)</li> <li>○우수 시범지역 및 유공자 표창추천</li> <li>-기관 및 유공자 표창(축진대회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「안전관리 협의회 등」 구성·운영하여 지원 및 협조방안 협의</li> <li>-구성 ; 기초자치단체, 우리공사 지역본부(지사), 가스공급자(도시가스, LPG판매), 기기제조자, 요식업소 단체 등 (지역실정에 맞는 구성원으로 조직)</li> <li>-지원 및 협조방안 협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치단체의 행정협조 및 지원</li> <li>· 가스공급자, 기기제조자의 협조 및 지원방안</li> <li>· 요식업소 단체, 우리공사의 협조 및 지원방안 등</li> </ul> </li> <li>○종업원대상 사업장 방문 안전교육 실시(공사지역담당자)</li> <li>○시설점검 및 개선지원(공급사에서 매월 1회 이상 실시)</li> <li>○행정기관, 공사발간물 등을 활용하여 업소 적극 안내</li> <li>○우수 모범업소 표창추천</li> <li>-우수 모범업소 표창(축진대회시)</li> </ul>

**라. 추진일정 계획**

**□ 가스안전 시범지역**

- 지역본부에서 시범지역 현황과약 보고 : 9월
- 우수 시범지역 및 유공자 표창추천 : 10월

**□ 가스안전 모범업소**

- 지역본부(지사)에서 모범업소 현황과약 보고 : 8월
- 모범업소 안내책자 작성·배포 : 9월~11월
- 우수 모범업소 표창추천 : 10월

**지원요청**

- 시범지역 지정·운영에 대한 광역시·도 협조공문 시달 등
- 과제별 조치 및 협조기관은 해당과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와 적극 협조
- 특히 지역본부(지사)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지정·운영 결과를 보고
  - 시범지역 지정 : 2000. 9.20까지
  - 모범업소 지정 : 2000. 8.20까지

**3. 행정사항**

- 2000년 추진계획에 대해 산업자원부 보고 및